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99

제출연월일: 2009. 6.

제 출 자: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인용 법령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(「지방자치법」)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
 - ▶ 제13조의3제1항 ⇒ 제15조제1항
- 3. 근거법규:「지방자치법」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O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(2009. 5. 25 ~ 6. 15)

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"를 "제15조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3조의</u>	제1조(목적) <u>제15조제1항에 따라</u>
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	
개폐를 청구할 때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함	
을 목적으로 한다.	

의 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699)

1. 의 안 명: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6. 25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7. 2(목)

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7. 9(목)

-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)
 - ○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인용 법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4. 주요내용
 - 상위법(「지방자치법」)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
 - ▶ 제13조의3제1항 ⇒ 제15조제1항
- 5. 관련법규
 - O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
- 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 -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